

특허출원과 특허관련 심판제도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글_ 편집실



● 특허권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며(신규성)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진보성)이어야 한다. 특허청의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수입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출원을 해야 하는데,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두 개 이상이 출원된 경우에는 출원인들이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출원인들이 협의하여 어느 하나의 특허출원을 공동출원으로 하고 나머지 출원을 취하함으로써 공동명의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 특허출원은 특허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출원서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하면 불수리(반려)처분을 받게 된다. 모든 출원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되고 5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개시되는데, 5년 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이 수리되면 그날부터 선원(먼저 출원함)의 지위가 확정되고,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리고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요건도 출원이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출원공개를 하는 이유는 출원된 기술을 공개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을 중복적으로 투자·연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제3자가 출원공개 된 기술을 임의로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기술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경고할 수 있고,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 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는데, 방위산업분야나 수출촉진에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한 출원의 경우 심사청구의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기도 한다.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특허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내고 특허권을 설정등록 할 수 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반면 출원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특허거절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그 시비를 다통 수 있다.

● 특허심판은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이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허법상 인정되는 심판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이미 부여된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있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판청구나 재심청구를 각하당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심결취소소송의 범위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의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신기술에 대한 권리보호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한 국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발자 개인이나 기업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